

[사 건 명] 행심 2015-41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학교 3-7반에 재학 중이고 청구 외 ∇∇∇과 같은 반 학생이며, 피해학생은 3-5반에 재학 중인 ●●●다.

나. 2015년 9월 중순 경, 5층에 있던 청구인은 다른 친구들과 놀기 위해 ∇∇∇과 함께 4층에 가서 놀다가 ∇∇∇이 ●●●를 투치고 놀리고 있던 것을 목격하였다. 청구인은 이 당시 ●●●가 역사책을 보고 있자, “무슨 네가 공부냐?”라고 하면서, 책상을 손바닥으로 투 쳤다. 그랬더니 ●●●가 청구인과 ∇∇∇을 때리러 계속 쫓아와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결국 ●●●에게 붙잡혀 팔과

어깨를 주먹으로 맞으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었다.

다. 이후 3, 4차례 장난을 치다가 ●●●가 화가나면 청구인은 사과하면서 화를 풀어주었다. 그때마다 ●●●가 사과를 받아주어 원만한 관계로 지냈다

라. 2015년 9월경 급식실에서 닭다리가 나와 ●●●에게 주었는데 먹기 싫다고 하면서 화를 내며 청구인의 식판에 던져서 김칫국물이 청구인 교복의 흰셔츠에 묻었으나 싸우지 않고 잘 지내왔다.

마. 몇 주 뒤, 청구인이 복도를 지나다 ●●●에게 장난으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살짝 두드렸는데 ●●●는 전처럼 쫓아오지 않았으며, 반응이 없어서 장난을 그만두었다.

바. 2015. 11. 4. (수) 청구인은 영어이동수업을 위해 ▽▽▽과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의 뺨을 손으로 밀쳤고, ▽▽▽은 ●●●를 놀리고 도망갔다.

사. 2015. 11. 5. (목)에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에 신고되었다”라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11. 17. 과 11. 24. 두 차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1. 30. 에 처분을 받고 12. 4. 알게 되었다.

가해학생	처분내용
○○○ (청구인), ▽▽▽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아. 청구인은 2015. 12. 21. 이 사건 처분 등에 이의가 있어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본 사건과 관련해서 청구인에게 내린 ‘출석정지 5일’ 처분은 실제 사건 내용에 비해 과도하다.

나. 피청구인은 사안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유도적인 심문과 강압적인 분위기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날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보냈다가 변경하는 등 안내가 부실하고 미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당일, 위원소개 등 절차와 사안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위원구성에 문제가 있어 11. 17. 에 이어 11. 24. 에 다시 개최하였고 11. 24. 회의 내용만 반영하였다.

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사건에 대한 숙지도가 부족했으며, 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행동을 보였다.

마. 피청구인은 분쟁조정과 관련한 중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처분을 내리는데만 급급하여, 위원회 진술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로 처벌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인권침해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청구인의 상태나 반성정도, 의견제출서를 고려하지 않았다.

바. 피청구인은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는 다른 질문과 편파적인 행동을 했으며, 교육청 장학사에게 보여준 회의록 쪽수와 ◇◇◇교사가 말한 쪽수, 청구인에게 준 쪽수가 각각 5장, 8장, 23장으로 다르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자술서 작성 당시 담임교사의 배석 하에 학생생활부 기획교사는 기술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하여 짧은 시간동안 의견청취만 하였으며, 유도심문과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나. 청구인과 법정대리인에게 담임교사를 통해 사실 확인과 절차안내를 했으며, 위원장의 교육청 출장으로 인해 위원회 개최일을 변경하고 통지하였다.

다. 회의록 공개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근거로 법률의 목적에 맞게 부분 공개한 것이며, 관련학생 자술서와 사건조사 자료 일체는 비공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정보공개자문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으나 비공개함을 재확인하였다.

라. 위원회 당일 학생생활부 기획 교사는 위원으로써가 아니라, 학생부장의 부재로 사회를 보조하기 위해 참석하였고, 청구인의 중재요청 설득에 따라 ●●● 측과 청구인 측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나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마.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진술을 가로막는 행위는 없었으며, 처벌을 강조하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도 없고, 이번 사건과 다른 질문이나 편파적인 행동은 없었다.

바. 2015. 11. 17. 위원회 이후 11. 24. 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11. 17. 회의시작 당시에는 정족수가 되었으나 위원회가 진행되는 중에 위원 1인이 퇴장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고 사안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뒤로 미룬 것이며, ●●● 측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전학과 즉각적이고 엄정한 격리를 요청하였지만, 가혹한 조치를 피하고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전학보다 낮은 단계의 출석정지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다른 사안에 내려진 조치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중을 엄정하게 심의하였다.

사. 2015. 12. 4. 16시경 청구인은 학생생활부로 찾아와 일면식도 없는 학생생활부 기획교사에게 장학사와 나눈 대화를 직접 듣겠다고 무례하게 요구하며, 회의록 관련해서 녹음이 있으니 빠짐없이 작성해야 할꺼라는 등 다분히 교권침해행위이자 위협 섞인 요구를 했다. 청구인의 이러한 행동은 반성하고 위원회의 조치를 수용하고 이행하겠다는 종전과는 다른 행동이었다. 이후, 학생생활부 기획교사는 청구인의 원대로 회의록을 구어체 형태로 보완작성하여 분량이 늘어났다.

아. 청구인은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인정하고 2015. 12. 7.부터 11. 일까지 이행을 마친 상태이므로, 조치가 감경된다 하더라도 감경된 조치를 다시 이행할 수는 없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석차연명부 작성이 2015. 11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조치 이행중의 학적변동은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졸업직전인 2016. 2. 11경 개최된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사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삭제가 결정되어 학생생활기록부에서 기록이 삭제되었다.

IV.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처분등 취소심판청구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수 있고,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

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취소등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할 것이며, 처분등 취소심판청구는 위법한 처분등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처분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8조 제4항은 ‘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제6호(출석정지)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위 법률 제1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반성정도과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인 2016. 2.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 대한 2015. 11. 24.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조치기록을 학생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거나, 피청구인이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청구인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없고,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이행한후, 졸업을 하였으며, 이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등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할 필요성이 없다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감경처분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과거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

할 소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예비적 판단)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22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각 구술심리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 11. 24.경 청구인이 영어이동수업을 위해 ▽▽▽과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피해학생의 뺨을 손으로 밀쳤고, ▽▽▽은 피해자를 놀리고 도망갔다. 청구인은 피해자와 친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놀려댄 적이 있으며,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두드리는등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위법/부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

요가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에서 판단한 것 외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등을 주장하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각 구술심리결과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를 인정할수 없다할 것이다.

라. 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VI.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